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박영원(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이주연(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2014. 3. 18.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요 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 동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공익신고자에 대한 미흡한 보상, 공익신고 대상과 적용범위의 협소화,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질적 보호조치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목적과 법적 근거,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이후 2013년 11월 20일까지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총 4,036건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92건, 2012년 1,153건, 2013년 2,591건이며, 분야별로는 건강분야 1,693건(41.9%), 안전분야 452건(11.2%), 환경분야 362건(9.0%)의 순으로 공익신고 접수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로 인해 지급한 보상금 역시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2013년 9월말까지 총 237건, 1억 9천 9백 9십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신고주체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한 반면, 영국과 일본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 호주와 캐나다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의 경우 우리나라

는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다섯 가지, 일본은 개인의 생명·신체보호,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범죄행위, 법적 준수 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도 영국과 거의 유사하다. 신고자 보호수준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신고자의 해고무효와 부당해고를 포함한 불이익금지와 같은 철저한 보호를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실질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동법에 반영되지 못한 대상 법률의 통폐합, 분리, 폐지 등 개정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적용대상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 및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부패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상비율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자진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에도 확대하는 방안,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의 경우 벌칙수준을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입법적 개선과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감시와 준법의식을 고양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차 례

□ 요약

I. 서 론 / 1

II.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현황 / 3

- 1. 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 3
-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용과 공익신고 현황 4
 - 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 내용 4
 - 나.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현황 9
- 3. 공익신고자 보상 현황 12

III. 주요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시사점 / 14

- 1. 미국 14
- 2. 영국 16
- 3. 일본 20
- 4. 호주 22
- 5. 캐나다 26
- 6. 시사점 28

IV.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 / 31

- 1. 적용대상 법률 규정 체계 변경 31
- 2. 적용대상 추가 및 확대 32
- 3. 포상규정의 신설 32
- 4. 책임감면 범위 확대 34

5. 벌칙수준 상향	35
6. 양벌규정 신설	37

V. 결 론 / 39

☐ 참고문헌

☐ 부록

표 차례

[표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11개 대상법률과 예시된 공익침해행위	5
[표 2] 보상금 산정기준	8
[표 3] 권익위 접수 공익신고 분야별 이첩·송부사건 접수현황	9
[표 4] 공익신고의 이첩·송부사건 처리현황	10
[표 5]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	12
[표 6]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관련 신고·보상 현황	12
[표 7] 주요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30
[표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개정안	33
[표 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개정안	34
[표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개정안	36
[표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설조항 개정안	38

그림 차례

[그림 1] 공익신고 이첩·처리 흐름도	11
-----------------------------	----

I. 서론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라 함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며,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여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그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공익신고의 대상과 적용범위의 협소화,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¹⁾과 미흡한 보상 그리고 실질적 보호조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특히, 공익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292건, 2012년 1,153건, 2013년 2,591건²⁾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

1) 2013년 10월 어린이집 내부비리를 고발하여 해직당한 강원도 평창의 어린이집 교사 3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복직 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하였음(박은하, 『어린이집 내부 비리 고발 교사 공익신고자 인정, 하지만...』, 경향신문, 2013년 10월 11일자.)

2) 2013년 공익신고 접수건수는 11월말까지의 통계임

로 처리하는 담당조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심사정책과, 공익보호지원과 등 2개 과에 불과함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목적과 법적 근거,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비교적 공익신고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이 보고서의 개선과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제도운영적 측면보다는 공익신고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관련된 입법적 개선과제에 초점을 두고자 함

II.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현황

1. 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신법’이라 함)은 법률 제10472호로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2011년 9월 30일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이전에는 2001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부패신고자를 보호하였음
 -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³⁾의 개념을 공직자의 법령위반행위와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었고, 신고대상을 공직자의 부패행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공공의 안전, 건강, 환경 등과 관련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였음
 - 또한, 민간영역에서의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약 63개의 개별 법령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보호 또는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각 법률간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개별 법령에 없는 경우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3) 「부패방지법」 제2조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익신고의 적용대상을 공공부문의 부패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공익침해행위까지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신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용과 공익신고 현황

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내용

□ 신고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로 한정되지 아니함 (「공신법」 제6조)

□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신법」 <별표>에 규정된 11개 법률 및 「공신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169개의 법률(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의하여 형사처벌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함
- 「공신법」 상의 11개 대상법률과 예시된 공익침해행위 및 「공신법 시행령」 상의 신고대상 법률은 [부록 1]과 같은데, 안전 분야는 약 56개, 환경 분야는 약 50개, 건강 분야는 약 45개로서 안전 관련 법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11개 대상법률과 예시된 공익침해행위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표시하거나 지리적 표시품, 표준규격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허위표시를 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도로·철도·교량·댐·항만·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식품위생법	식품 및 식품첨가물,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규격에 위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수입·진열·운반하는 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안에서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이를 위하여 화약류·덧·울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거짓으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공산품을 제조·수입하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등 폐기물 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행위
혈액관리법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없이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행위, 헌혈자의 신원확인·건강진단, 채혈금지 대상 여부·과거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 등을 실시하지 않고 채혈하는 행위
의료법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면허조건 불이행 행위, 의료기사 아닌 자의 의료기사 행위,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의료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작성·교부 행위,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 행위
소비자기본법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 안전조치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품 가격 및 용역 대가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부당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부당 방해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 공동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공신법」 제6조, 「공신법 시행령」 제5조)

-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이며, 언론기관은 포함되지 않음
- 신고시에는 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익신고자 보호 (「공신법」 제11조 ~ 제25조의2)

- 신고자의 비밀 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고자의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 및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불이익의 종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서부터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과 같이 정신적·신체적 손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 기타 보호장치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 대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은 무효로 함

□ 공익신고자 지원 (「공신법」 제26조, 제27조)

○ 보상금 지급

-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보상금의 최대 금액은 10억원으로서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기준은 [표 2]와 같음

[표 2]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2014.

○ 구조금 지급 (「공신법」 제27조)

-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나.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함)의 경우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공익신고를 1차적으로 접수하며, 공익심사정책과와 공익보호지원과를 통해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위 기관에서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①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 등에 관한 사항, ③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④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이후 2013년 11월 20일까지 공익신고 접수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4,036건이 접수되었음

[표 3] 권익위 접수 공익신고 분야별 이첩·송부사건 접수현황

(단위: 건, %)

연도 \ 분야	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기타
합 계	4,036 (100.0)	1,693 (41.9)	452 (11.2)	362 (9.0)	326 (8.1)	120 (3.0)	1,083 (26.8)
2011	292 (100.0)	169 (57.9)	8 (2.7)	10 (3.4)	46 (15.8)	18 (6.2)	41 (14.0)
2012	1,153 (100.0)	391 (33.9)	167 (14.5)	201 (17.3)	118 (10.2)	29 (2.5)	249 (21.6)
2013	2,591 (100.0)	1,135 (43.8)	277 (10.7)	151 (5.8)	162 (6.3)	73 (2.8)	793 (30.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현황』,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자료, 2013.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92건, 2012년 1,153건, 2013년 2,59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공익신고 접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건강 및 안전 분야 등 생활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2013년도 공익신고 접수 현황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건강분야 1,693건(41.9%), 안전분야 452건(11.2%), 환경분야 362건(9.0%)의 순으로 공익신고 접수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건수는 최근 3년간 거의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접수된 공익신고 이첩·송부사건 관련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 공익신고의 이첩·송부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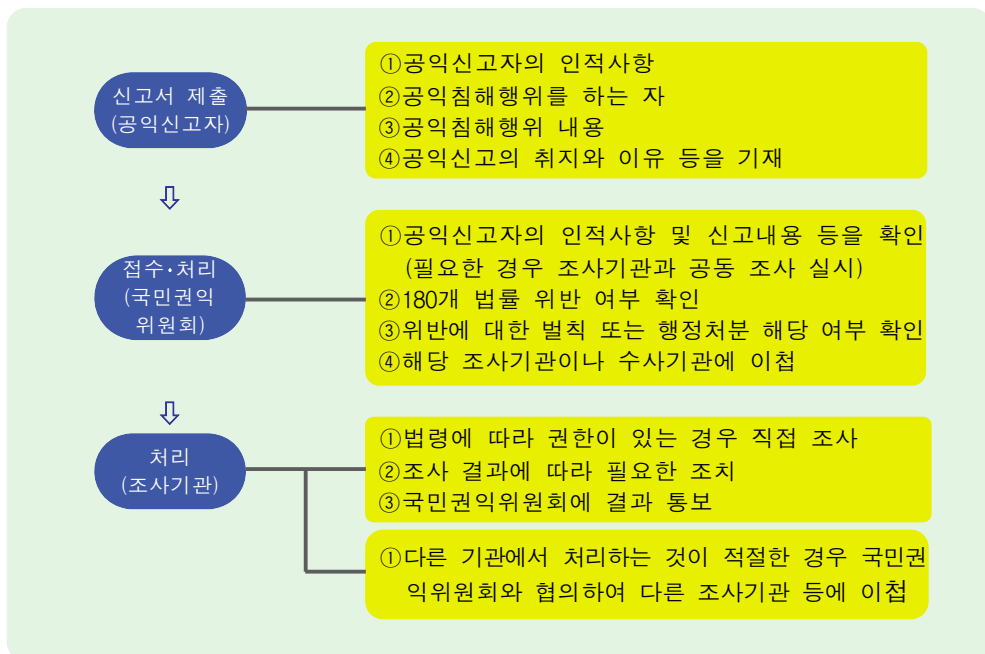
접수 사건	처리현황					이첩 조사결과				송부 조사결과			
	처리 합계 (A+B+C)	이첩·송부현황			종결 (C)	결과통보현황				결과통보현황			
		합계 (A+B)	이첩 (A)	송부 (B)		합계 (D=F+G)	혐의 적발 (F)	적발률 (F/D)	무혐의 (G)	합계 (D=F+G)	혐의 적발 (F)	적발률 (F/D)	무혐의 (G)
4,036	3,166	1,699	180	1,519	1,467	180	147	81.7	33	1,519	832	54.8	68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현황』,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자료, 2013.

- 이첩은 명확한 공익침해행위로 공동조사 등을 통해 추가 증거서류 및 혐의를 확보하고 권익위의 의결을 거쳐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81.7%의 적발률을 나타내고 있음⁴⁾

- 송부는 공익침해행위가 불분명하여 해당 직무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54.8%의 적발률을 나타내고 있음
-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됨

[그림 1] 공익신고 이첩·처리 흐름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현황』,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자료, 2013.

- 또한, 권익위 이외에 공공기관 역시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
 - 분야별로 「식품위생법」(건강), 「도로교통법」(안전), 「폐기물관리법」(환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소비자 이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경쟁) 관련 신고가 빈발함

4) 공익신고의 이첩 적발률이 81.7%인데 반해 부패신고의 이첩 적발률은 70%임

3. 공익신고자 보상 현황

- 2011년 9월 30일 「공신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2012년 32건, 2천 8백 4십 7만원, 2013년 9월말까지 205건, 1억 7천 1백 4십 6만원 등 총 237건, 1억 9천 9백 9십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2013.10.31.기준)

(단위: 건, 천원)

구분	보상금	
합계	237	199,937
2012년	32	28,472
2013년	205	171,46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보상구조 관련 통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자료, 2013.

- 권익위 이외에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관련 신고와 보상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6]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관련 신고·보상 현황

(단위: 건, 천원)

분야	법률명	신고 건수	보상 건수	보상 금액
건강	청소년보호법	131	57	402,450
	식품위생법	16,581	521	58,143
	약사법	739	14	13,250
	축산물위생관리법	144	1	5,00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168	10	1,270
	가축전염병예방법	385	10	1,000
안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89	1,352	68,7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52	264	11,905

분야	법률명	신고건수	보상건수	보상금액
환경	폐기물관리법	5,902	967	23,931
	대기환경보전법	2,148	484	3,700
	산지관리법	231	3	1,5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1	9	730
	농지법	51	1	500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422	4	45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90	7	44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	7	180
	하수도법	73	1	100
소비자 이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19	93	80,650
	직업안정법	15	4	4,00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17	3	1,050
공정 경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6	120	117,5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40	32	6,400
합계	22개 법률	35,644	3,964	802,86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세미나자료집, 2012, p.20.

- ☐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관련 신고건수는 총 35,644건, 보상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11.1%인 3,964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 ☐ 공익신고의 세부 분야별 신고건수는 식품위생, 폐기물 관리, 소방안전관리 관련 분야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상건수는 소방안전관리, 보상금액은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Ⅲ. 주요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시사점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된 해외사례로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1. 미국

- 연방 정부 차원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1989년 제정된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WPA)」이 있음
 - 법률 위반, 예산 낭비 등 연방정부 행정기관의 불법과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함
- 동법에서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와 부패신고 접수 처리 업무를 관장하는 특별조사국(Office of Special Counsel)과 실적제도보호위원회(Merit System Protection Board)를 규정하고 있음
 - 실적제도보호위원회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실적제도의 원칙 적용을 목적으로 청문, 재결 등의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독립기관임. 위원회는 관련 증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최종 명령 또는 결정을 받은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는 이에 대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음
 - 특별조사국은 수사 및 기소권을 갖는 연방 독립기관으로,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소속이었다가 1989년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행정부 내 독립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함. 특별조사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음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와 실적제도 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인사 행위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들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정부 고용자 및 지원자(공무원 시험 응시자)를 보호함
 - 법률 위반, 관리 실패, 재원의 낭비, 권한 남용, 공중 보건이나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을 공개하고자 하는 연방공무원을 위한 신고통로를 제공함
 - 특별조사국은 제보 내용을 접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 총장 또는 기관장에게 이송함. 또한 특별조사관과 특별조사국 소속 공무원은 증인을 조사하고, 증언 조사를 받고, 증거를 접수함
 - 특별조사관은 증인에 대해 소환장의 발부, 선서증언의 명령 및 서면 심문에 대한 답변 명령을 함. 만약 자신이 발부한 소환장의 집행 불능 및 소환거부의 경우, 특별조사관은 법원으로 하여금 소환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신청함
 - 신고자 신분 보호를 위해, 특별조사관은 법에 규정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신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않음. 그러나, 법률이 특별히 공개를 금지한 정보, 국가안전 또는 외교상의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특별히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한 정보의 경우에는 신고 권한이 인정되지 않음
 - 또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우선조치를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인사충원 시, 당해 기관장은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당해 기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의 직급과 임기에 있어 동일한 다른 지위로 전보되도록 당해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음
- 1989년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 법원의 해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의 개정이 논의되어 2012년 9월 28일에 미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였음.⁵⁾

- 예를 들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다시 신고할 수 있게 됨. 기존에 국가안전과 관련하여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에도 개정 법률을 적용함. 또한, 각 부처의 감찰관(Inspector General)이 내부공익신고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이 법안에는 정보기관 직원들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는 포함되지 않음

-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0월 10일 대통령령을 공포해 정보기관(CIA 포함) 직원 또는 기밀사항에 접근 가능한 정부 직원들이 국가안보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부기관의 세금납비, 사기, 권한남용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⁶⁾

2. 영국

-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제외)에서 효력을 갖는 「공익 제보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이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 됨

5) S. 743: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 (최종 검색일 : 2013.10.17)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s/112/s743>>

6) The White House,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19*, Washington, D.C., 2012.

- 공익을 위해 부패행위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신고하는 개인들을 보호하고, 그러한 개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법 적용 범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제3섹터(voluntary sector)를 모두 포함한 국가 내 모든 분야의 부패행위임. 적법한 신고행위로 인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을 담고 있음
- 즉, 동법 제2조에서는 ‘피용자는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용자에게 의한 조치나 고의적인 조치의 불이행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함
- 단, 국가보안기관 직원과 경찰공무원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내부공익신고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여야만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보한 것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고한 정보 및 그 정보에 포함된 주장이 충분히 진실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함.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보호대상 신고로 인정되지 않음. 또한 「정부비밀법(Official Secrets Act)」 위반과 같이 불법행위가 수반된 내부 신고인 경우에도 보호되지 않음
- 미국이나 호주와 달리 영국의 제도는 신고자의 신고권한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임
- 1차적으로 해당 조직에 정보공개 요구를 먼저 한 후 2차적으로 담당 정부기관에 제보할 수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마지막 단계로 대외적인 신고 확산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공익신고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으로부터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신고행위’와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신고일 경우 고용법원(employment tribunal)에 제소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 신고행위란 신고를 하는 피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비추어 볼 때 다음 항목들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의미함
 - 범죄행위가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정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기 항목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가 고의적으로 은폐되었거나 은폐되고 있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한편, 적법한 제보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신고자가 사전에 그 문제를 고용인에게 보고하여 환기시켜야 함
 - 신고자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이유가 조직 내부적으로 공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리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증거가 은폐되거나 파괴되리라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거나 적절한 내부보고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아야 함

- 적법한 신고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진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당해 불이익 조치가 최종적으로 발생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여야 함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신고자의 경우 과잉인력으로 분류하여 해고의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으며, 고용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자는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함
-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신고자가 적법한 제보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 보상금액은 제한을 두지 않고 소송에 의해 유발되는 비용손실분도 포함하고, 기대되는 금전적 편익에 대한 손실분까지 합산하여 결정함
 - 최종적으로 법원의 평가로 신고자 본인이 당해 불이익 조치에 일정부분 기여하였거나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 총액은 감액됨
 - 부당해고
 - 보상액의 상한 규정은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음.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을 비롯하여 내부고발로 인한 신고자의 손실분, 피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혜택, 고용보험, 노조활동 등의 특별보상까지 확대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함
 - 여기에 더해 피신고기관이 법원의 신고자에 대한 재임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보상도 규정함
 - 임시 구제 조치에 의한 고용 보장

- 이는 신고자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대상 제보행위를 한 신고자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의 소송기간 동안에는 고용계약 기간 종료 도래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또는 고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신고자는 소송기간 종료시점까지 고용이 보장되어 신분보장을 받게 됨
- 만약 사용자가 법원의 재임용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보상을 명령해야 함

3. 일본

- ☐ 일본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로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이 있음
- ☐ 동법은 2004년 제정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이 법의 목적은 공익통보자의 보호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 이익의 보호를 위한 법령규정의 준수에 있음
 - 총 430 여개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신고대상이 됨
- ☐ 「공익통보자보호법」은 공익통보 및 공익통보자 등을 정의하고, 공익통보자에 대한 해고의 무효 등 민사원칙을 정하고, 통보자·사업자·행정기관의 의무 등을 정하고 있음
- ☐ 공익통보의 대상은 개인의 생명과 신체보호,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음

□ 공익통보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첫째, 노동자이어야 함. 노동자란 사업자의 범죄행위 및 법령위반행위를 알게 된 입장에 있는 한편, 통보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은 자임. 여기에는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파견노동자 및 거래처사업자의 노동자, 공무원 등이 포함됨
- 둘째, 부정한 목적이 아니어야 함. 통보를 수단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등에 의한 통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 아님
- 셋째, 사업자 또는 노무제공처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의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하여 통보해야 함
- 넷째, 통보대상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함
- 다섯째, 노무제공처 또는 노무제공처가 지정한 자, 통보대상사실에 대한 처분 또는 권고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피해의 확대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피해의 확대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보도기관, 소비자단체, 국회의원, 피해자 등은 포함되나, 폭력단 및 경쟁상대기업 등은 포함되지 않음
- 공익통보자는 공익통보를 한 민간기업의 근로자를 의미함

□ 「공익통보자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직접 사업자외부에 공익통보를 한 것에 대해 보호하며, 보호대상인 공익통보의 신고유형은 다음과 같음

- 통보대상사실이 발생 또는 틀림없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 공익통보자가 근무하는 해당 기업에 신고

- 통보대상사실이 발생 또는 틀림없이 발생할 것으로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대상 사실에 대해서 처분 또는 권고 등을 하는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에 신고
- 통보대상사실이 발생 또는 틀림없이 발생할 것으로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이익을 받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4. 호주

- ☐ 호주는 연방 차원에서의 독립적인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아직 없음
- ☐ 정부 내에서는 「공직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따라 공직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가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함
 - 내부공익신고가 범죄 및 부정, 정부 재원의 남·오용, 관리의 잘못, 공공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일 때 보호받는다 고 규정함
- ☐ 분야별 법률로는 5개 법률이 보호 조항을 두고 있음. 「직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 1996)」, 「직업건강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1991)」은 사용자의 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정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에 대한 처리 과정에 참여한 피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함
- ☐ 지방정부의 경우는 6개주와 수도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모두 각자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함.⁷⁾ ACT 의회는 최근 2012년 9월 5일에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2012)」를 통과시킴

- 특히 1994년 제정된 퀸즈랜드 주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1994)」은 공익신고 보호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의 목적은 ① 공공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과실 또는 부당한 행위, ②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 ③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하는 자를 특별히 보호하여 공익을 촉진하는 데 있음
 - 내부공익신고 의무자는 광의의 공공기관 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으로 한정함. 내부공익신고 대상은 공공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와 공적 재원의 낭비와 관련된 과실 또는 부실한 운영 행위,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등을 포함함
 - 그러나 민간부문의 부패행위 제보 대상은 제한적으로 규정함. 장애인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구체적인 위험이나, 법령의 규정 위반 또는 그 조건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그리고 공익 제보로 인하여 제보자에게 가해지는 보복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음
 -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했을 수 있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제보가 가능함
 - 제보를 법에서 규정한 관련기관의 기관장에게 했을 경우에만 공익적 제

7) Whistleblowers Australia, State Public-Sector Employees
(최종 검색일: 2013.10.17.) <<http://www.whistleblowers.org.au>>

보로 인정함. 이러한 기관으로는 공공기관, 국회의원, 고위사법관리 등이 있음

- 제보는 익명 방법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야 함
- 이 법은 강력한 신고자 신분 보호 조항을 두고 있음. 제보자의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 면제와 보복 금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 보복으로부터의 구제수단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행정행위, 그리고 명령적 구제를 통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와 손해배상을 포함한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함
- 그러나 신고자의 보상에 대한 조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대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은 보복행위를 범죄로 인정해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무원 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나아가서 보복을 행하는 자는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신고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소송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은 보복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하여 제보자인 공무원은 보복에 대하여 징계 조치, 보직 임명, 인사이동 또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복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직위원회에 인사이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 특이한 점은 보복이 있다고 노동위원회 또는 대법원이 판단한 경우 보복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신고자가 금지명령의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가금지 명령을 인정하고 있어 신고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신분보호를 기하고 있음

- 이 법의 집행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 관련 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누설한 경우 처벌을 받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제보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함
- 퀸즈랜드 주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1994)」은 2010년 「공익제보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2010)」으로 개정됨.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음⁸⁾
 - 제보의 기준: 기존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제보자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자신이 제보하려는 정보가 부정행위를 입증한다고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주관적 기준)’는 기준만을 제시했지만, 새로운 「공익제보보호법」은 ‘제보자가 진심으로 믿는지와 상관없이, 정보가 부정행위를 입증한다(객관적 기준)’는 추가적 기준을 제시함
 - 언론에 대한 제보(새로운 조항): 오직 제보자가 이미 적절한 정부기관에 제보를 했고, 그 기관이 제보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보에 대해 조사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제보 후 6개월 이내에 제보자에게 제보에 대해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리지 않는 경우 제보자는 같은 정보를 언론에도 제보할 수 있음
 -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추가 조항): ① 공공기관은 직원들에 의해 제보자에게 행해진 보복 행위에 대해 간접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음, ② 보복 행위를 당한 제보자는 대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반차별법(Anti-Discrimination Act 1991)」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음. 이는 보복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임, ③ 기업은 제보자가

8) Queensland Government, Major Changes from the 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1994 to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2010 (최종 검색일: 2013.10.17.)
<www.ethics.qld.gov.au>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가 아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제보자와 관련해 어떠한 경영 활동도 할 수 있음

- 감독 기관(신설된 조항): 공직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가 감독 기관이 됨. 주요 기능은 법의 이행을 감시하며, 공익제보와 관련한 경향을 모니터하고 통계를 수집하며, 공공기관들이 공익제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검토하고, 교육과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공직위원회는 매년 공익제보와 관련한 통계를 포함해 법의 운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5. 캐나다

- 캐나다의 공익신고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2001년 제정된 「공직자내부 공익신고보호법(Public Service Whistleblowing Act)」임
- 직장 내 윤리실천 기준에 대한 교육을 촉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며,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둠. 공공부문이 적용대상임
- 공직자들로 하여금 직장 내 위법한 작위나 부작위를 상설 신고창구인 공직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판무관(Public Service Commissioner)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란 캐나다 내에서 유효한 법을 위반한 행위, 공적자금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공중보건 또는 환경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훈령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 중대한 과실이나 직권남용 행위를 말함

- 공직자는 직장 내 위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판무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에 대한 비밀을 요청할 수 있음.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고, 공개가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 사실이나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신고자는 신고자의 신분 및 서명, 신고 상대방, 해당 부정행위나 부작위가 불법적이고, 그러한 부정행위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을 명시해야 함. 이러한 신고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장에 대한 충성이나 비밀보장 의무에 위배되지 않음
- 판무관은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여 문제를 처리하며 처리되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고함. 또한 공직자들이 직장 내 부정행위 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했거나 신고할 의향을 보임으로써 보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함
- 신고자가 판무관에게 공직자가 위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개했거나 공개 의도를 말했다는 이유, 이 법에 반하는 위법한 작위나 부작위를 거부했거나 거부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됨
- 불이익 처분의 내용으로는 괴롭힘, 금전적 벌금, 연공서열의 변경, 정직 또는 해고, 중요한 업무의 거부 또는 강등, 고용 편의 지급의 거부 또는 기타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말함

- ☐ 보복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신고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 절차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내부공익 신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러한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 후 2년 이내에 신고자가 받은 모든 징계 조치에 이러한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 신고자가 판무관에게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없을 경우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함
- ☐ 내부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현행법이나 특별한 신뢰 관계를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판무관이나 판무관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보복적 징계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신고사실이나 신고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는 범죄행위를 구성하며 즉심에서 \$10,000을 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함

6. 시사점

- ☐ 공익신고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크게 신고주체, 신고대상, 보호사항, 벌칙규정 등을 비교해 볼 수 있음
- ☐ 먼저, 신고주체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한 반면, 영국과 일본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 호주와 캐나다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신고주체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신고 보호제도가 일반국민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진전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신고대상의 경우 우리나라는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다섯 가지, 일본은 개인의 생명·신체보호,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범죄행위, 법적 준수 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이는 미국, 호주, 캐나다도 거의 유사함
- 신고대상의 경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사례와 같이 범죄 및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보호사항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신고자의 해고 무효와 부당해고를 포함한 불이익금지와 같은 철저한 보호를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경우 불이익금지 뿐만 아니라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공익신고 보호의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발전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 다만, 다섯 가지의 신고대상 분야 이외의 경우 공익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상존함
- 벌칙규정의 경우 일본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강제·제재조항이 없으며,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배상판결이 가능한 수준임
- 우리나라는 공익신고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반시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조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7] 주요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illegible]

IV.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⁹⁾

1. 적용대상 법률 규정 체계 변경

- 「공신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에도 적용 법률 중 대표적인 11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169개는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적용 법률을 모두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등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즉, 시행령 별표에 정한 적용대상 법률을 「공신법」의 별표에 추가하도록 개정함
- 또한 「공신법」 시행 이후 동법에 반영되지 못한 대상 법률을 통폐합 또는 분리, 폐지하여 개정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통폐합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제명이 바뀌었으므로 「공신법」 <별표>의 제1호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야 함
 -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분리된 「공신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0호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9) 2013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가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참고하였음.
 2013년 9월 26일 정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2014년 3월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임

2. 적용대상 추가 및 확대

- ☐ 「공신법」에 따른 보호(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불이익의 원상회복 등) 및 보상은 적용대상의 법률 위반에 국한되므로, 내부 또는 주변의 감시와 제보가 필요한 건강·안전분야의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신고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 이에 적용대상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 및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다수의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학교급식, 교통안전, 위생관리, 위험물안전 등), 사회·경제적 약자관련, 권익보호 및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법률(노인, 장애인, 아동, 중소기업체, 소상공인 보호·지원 등), 국민다수에 영향을 미치나 위반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져 내부신고 필요성이 높은 법률(허위인증, 순위조작 등 위반행위의 전문성이 높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 등) 등을 추가하여 식품·안전·환경 등 민생 침해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률의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포상규정의 신설

- ☐ 현재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공신법」 제26조),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비율도 회수액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음

- 「공신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보상 이외에 포상규정을 「공신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⁰⁾
-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른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신고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보상의 비율도 현재 회수 액수에 따라 4~20%로 규정된 것을 부패예방의 필요성이 큰 사회실정을 감안하여 보상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2(포상) 위원회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 「부패방지법」의 경우 수입회복 등이 없어도 공익 기여가 큰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제68조)

4. 책임감면 범위 확대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형벌·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공신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가 미흡함
 - 법 위반에 개입한 자진신고자가 과징금·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보호가 어렵고 신고 유도를 통한 공익침해 시정의 한계가 있음
 - 또한 형벌에 대한 감면과 기관장의 재량이 부과되는 징계에 대한 감면은 가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문제가 지적됨
- 이에 자진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처분의 감면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표 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

현행	개정안
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 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징계, 과징 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처분권한을 가진 자에게 그 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벌칙수준 상향

- 현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공신법」 제30조)
- 벌금의 경우 공익침해행위로서 취득할 수 있는 이득에 비하여 소액이고 위하력이 낮아 벌칙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동법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처벌수준이 타법률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낮은 점¹¹⁾ 및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하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및 반복성을 볼 때 벌칙수준이 보다 높아질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의 경우 벌칙수준을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신고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표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

현행	개정안
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6. 양벌규정 신설

- ☐ 현행 「공신법」은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는 행위자 이외 감독자 즉 법인, 개인 사업자, 기관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책임 회피 및 전가의 우려가 있음
- ☐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함¹²⁾

12) 법인 등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 도입 등 자국의 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반조치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UN반부패협약 및 OECD뇌물방지협약의 권고사항임

- 다만,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여야 함

[표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설조항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 결론

- 공익침해행위는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내부인의 신고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신고자의 보호·보상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시행은 국민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소비자 보호 등 분야에서 부패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이 보고서는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제시된 입법적 개선과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공신법」 시행 이후 동법에 반영되지 못한 대상 법률의 통폐합, 분리, 폐지 등 개정상황을 반영해야 함
 - 적용대상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 및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부패예방의 필요성이 큰 사회실정을 감안하여 보상비율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진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의 경우 벌칙수준을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함

-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입법적 개선과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감시와 준법의식을 고양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방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세미나자료집, 2012.
- _____,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가토론회 자료집, 2013.
- _____, 『2013년도 국무총리실 국정과제평가 제출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자료, 2013.
- _____,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현황』,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자료, 2013.
- _____, 『공익신고자 보호보상구조 관련 통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자료, 2013.
- 김승태, 「한국의 공익신고자보호법안 평가」,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 2010.
- 박흥식,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한 아시아 각국의 입법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18권 제2호, 2004.
- 이상범, 『내부공익신고보호제도의 국가간 비교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6.
- 장지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 장화익, 「근로자 내부고발보호제도 국제비교: 영·미·일의 사례와 시사점」,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2호, 2007.
- 조수영,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1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3.

[부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가축전염병예방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개항질서법」
6. 「건강검진기본법」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8. 「건설기계관리법」
9. 「건설기술관리법」
10. 「건설산업기본법」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 「건축사법」
13. 「검역법」
14. 「경비업법」
15. 「계량에 관한 법률」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7. 「골재채취법」
18. 「공연법」
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1. 「관광진흥법」
22. 「광산보안법」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4. 「교통안전법」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6. 「국가기술자격법」
27. 「국민건강증진법」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30. 「궤도운송법」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4. 「늪시 관리 및 육성법」

35. 「내수면어업법」
3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8. 「농약관리법」
39. 「농어촌도로 정비법」
40. 「농어촌정비법」
41. 「농지법」
4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4. 「대기환경보전법」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8. 「도로교통법」
49. 「도시가스사업법」
50. 「도시철도법」
5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3. 「말산업 육성법」
54. 「먹는물관리법」
5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 「문화재보호법」
5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5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6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2. 「보험업법」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4. 「비료관리법」
65.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66. 「사료관리법」
67. 「산림보호법」
6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 「산업안전보건법」
70. 「산업표준화법」

71. 「산지관리법」
72. 「상호저축은행법」
73. 「새마을금고법」
74. 「석면안전관리법」
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76. 「선박안전법」
7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7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79. 「소방시설공사업법」
8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1. 「소하천정비법」
82. 「송유관 안전관리법」
83. 「수도법」
8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86. 「수산업법」
87. 「수산자원관리법」
88. 「수상레저안전법」
8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0. 「습지보전법」
9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92. 「식물방역법」
93. 「식품산업진흥법」
94. 「식품안전기본법」
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6. 「야생동·식물보호법」
97. 「약사법」
98. 「양곡관리법」
9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0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01. 「어장관리법」
102. 「어촌·어항법」
1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04. 「여신전문금융업법」
1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06. 「염관리법」

10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8. 「영유아보육법」
10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10. 「원자력법」
1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1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6. 「의료기기법」
1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8. 「인삼산업법」
1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20. 「자격기본법」
121. 「자연공원법」
122. 「자연재해대책법」
1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2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26. 「전기공사업법」
127. 「전기사업법」
128.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30. 「전력기술관리법」
1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35. 「제품안전기본법」
136. 「종자산업법」
137. 「지진재해대책법」
138. 「지하수법」
139. 「직업안정법」
140. 「집단에너지사업법」
141. 「철도안전법」
142. 「청소년보호법」

143. 「청소년활동진흥법」
14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5. 「초지법」
146. 「축산물위생관리법」
14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48. 「친환경농업육성법」
149. 「토양환경보전법」
15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1. 「하수도법」
152. 「하천법」
153. 「학교보건법」
1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56. 「항공법」
15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158. 「항로표지법」
159. 「항만법」
160. 「항만운송사업법」
1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3. 「해양환경관리법」
164. 「화장품법」
165.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6. 「환경보건법」
16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68. 「환경영향평가법」
16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NARS-----]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26호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2014.2.12.	전진영
제225호	2013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개정내용 및 특징	2014.1.27.	김영일 김종갑
제224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현황과 과제	2013.12.31.	이승현
제223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3.12.31.	조주은
제222호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관리현황과 향후 과제	2013.12.31.	하혜영
제221호	군 영창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13.12.31.	형혁규 김선화 김성봉
제220호	재판방송의 쟁점과 과제	2013.12.31.	조규범
제219호	미충족 의료 파약을 위한 미치료를 지표 개선방안	2013.12.31.	김주경
제218호	기초연금 도입 논의와 향후과제	2013.12.31.	원시연
제217호	가계 식품비를 이용한 식품 소비 복지지표의 개발	2013.12.31.	장영주
제216호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12.30.	김경민
제215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12.30.	박주연
제214호	대학평가지표 개선방안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2013.12.30.	조주현
제213호	코넥스시장의 현황 및 개선방향	2013.12.30.	김정주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12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입법영향 분석	2013.12.27.	유 응 조
제211호	주요국의 정치자금 투명성 관리제도	2013.12.26.	이현출 임채진
제210호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의 쟁점과 과제	2013.12.26.	장 경 석
제209호	「최저임금법」 제6조5항[택시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3.12.26.	한인상
제208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2013.12.26.	이승현
제207호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과제	2013.12.20.	조 형 근
제206호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2013.12.19.	박 준 환
제205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3.12.18.	김유향 심우민
제204호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2013.12.18.	조주현 정도영 박준환
제203호	북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평가	2013.12.17.	김 갑 식
제202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제영향분석	2013.11.29	김 준
제201호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3.11.15.	유재국
제200호	남북경협 현황과 과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2013.11.7.	이승현
제199호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주요 쟁점 및 과제	2013.9.26.	이동영
제198호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	2013.8.21.	김영일 전진영
제197호	법제화 커버드본드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3.8.16.	김 효 연
제196호	핀란드 초·중등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2013.8.5.	이덕난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95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3.7.29.	유 제 범
제194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 -주택의 건설기관과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2013.7.24.	이 창 호
제193호	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 과제	2013.5.6.	이만우 김영수
제192호	수도권규제관련 해외정책 동향과 과제	2013.4.17.	이 창 호
제191호	군사법원법상 관할관·심판관제도 개선방안	2013.4.5.	한석현 이재일
제190호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분석 및 자민당 정권의 주요 정책 전망	2013.3.13.	이현출 김유정
제189호	국가 수자원 조사 선진화 방안	2013.2.28.	이 기 하
제188호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시뮬레이션 분석	2013.2.26.	김 중 갑
제187호	청년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2013.2.20.	박 기 현
제186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3.2.19.	서동국 허 원
제185호	김정은 정권 출범의 특징과 향후 전망	2013.1.18.	김 갑 식
제184호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3.1.15.	전 형 진
제18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중복 위원회의 설치제한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3.1.14.	박 영 원
제182호	「국회법」개정안 중 의안자동상정제와 안건신속처리제의 입법영향분석	2013.1.9.	전 진 영
제181호	「의료법」및「약사법」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조항의 입법영향 분석	2012.12.31.	김 주 경
제180호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12.31	이 여 진
제17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2.12.31	한 인 상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78호	MVNO 활성화 현황과 향후 과제	2012.12.31	이정윤 이승현
제177호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의 주요쟁점과 과제	2012.12.31	유의정 이덕난
제176호	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2.12.31	조형근
제175호	문화복지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개선 방향	2012.12.28	김휘정
제174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2012.12.27	이덕난 유지연
제173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출효과 분석과 시사점	2012.12.26	최세중 김봉주
제172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012.12.6	조주현
제171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	2012.12.5	한인상
제17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2.11.23	김 준
제169호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2012.11.13	김선화
제168호	에너지·환경정책 관련 투자자 ISD 사례연구- 바덴팔 대 독일 정부의 경우	2012.11.8	최준영
제167호	2012 미국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	2012.11.5	이정진
제166호	「공직선거법」상의 SNS선거규제 조항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2.10.18	김유향 심우민
제165호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 보호 정책	2012.10.12	김주경
제164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법제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 : 조정을 중심으로	2012.9.14	이건목
제163호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개선방안	2012.9.13	이덕난
제162호	국민연금급여의 국가 지급책임과 연계한 기금운용 개선방향	2012.8.24	원종현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61호	선거방송의 쟁점과 개선방안	2012.8.22	김여라
제160호	한강 수계관리기금 관리정책의 개선방안	2012.8.8	김경민
제159호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2012.7.13	이혜미
제158호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2012.6.25	조주은
제157호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운용 현황과 개선 방안	2012.6.15	유재국
제156호	제18대 국회 입법 활동 분석	2012.6.7	전진영
제155호	「위치정보보호법」상의 동의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2.5.31	김유향 심우민
제154호	국회 원구성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2012.5.17	전진영
제153호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2.5.14	박기현
제152호	스마트TV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2.5.10	조희정
제151호	IT 생태계 구조변화에 따른 IT 추진 체계 개편 방향	2012.4.25	조주현 정도영 유재국 김민지 박영원 조희정 심우민
제150호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4.16	김형진
제149호	식품산업 산업연관분석과 정책방향	2012.4.6	장영주 정도영 김봉주
제148호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2.3.27	권순영
제147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2.3.26	김종갑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46호	디지털 환경에서 영상물 유통 규제 개선방안: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를 중심으로	2012.3.23	조 형 근
제145호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정책수행체계의 개선방안	2012.3.13	김 휘 정
제144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입법영향분석 -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2012.2.21	원 종 현
제143호	북핵 일괄타결 협상안과 6자회담: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2012.1.25	이 승 현

-----NARS]

현안보고서 제227호

발 간 일 2014년 3월 18일
발 행 고현욱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788 · 456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21-000634-14

© 국회입법조사처, 2014

현안보고서 제227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